

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22. 5. 11 선고 2021가단208092 판결 [사해행위취소]

전 문

원 고 A

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종권

피 고 B 주식회사

소송대리인 법무법인 (유한) 중부로

담당변호사 정수정, 박혜미

변 론 종 결 2022. 4. 13.

판 결 선 고 2022. 5. 11.

주 문

1.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.

2.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.

N

청 구 취 지

소외 C이 피고에게 한 2020. 1. 6.자 23,000,000원의 변제행위를 취소한다. 피고는 원고에게 23,000,000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%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.

이 유

1. 기초 사실

가. 원고는 C에게 2019. 11. 11.자 준소비대차계약에 따라 180,000,000원의 금전채권을 가지고 있다(갑5 공정증서).

나. 피고는 C과 D을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가단5227854호로 변제행위의 취소와 가액배상을 구하는 사해행위 취소소송을 제기하였는데, 위 법원은 2019. 8. 29. “① D과 C 사이에 한 별지 목록 기재 각 변제행위를 76,625,000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한다. ② C은 피고(위 사건의 원고임)에게 76,625,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%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.”는 내용의 승소 판결을 선고하였다.

다. C은 위 패소 판결에 항소하였다. 항소심 법원에서는 위 “C은 피고(위 사건의 원고임)에게 2,300만 원을 2020. 1. 17.까지 지급하고, 피고는 나머지 청구를 포기한다.”는 내용의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을 하였고, 그 후 위 결정은 확정되었다[서울중앙지방법원 2019머619269(2019나56694); 이하 ‘이 사건 조정결정’이라고 한다]. 위 조정결정에 따라 C은 2020. 1. 6. 피고에게 2,300만 원을 변제하였다.

[인정근거] 다툼 없는 사실, 갑 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, 변론 전체의 취지

2. 원고의 주장

원고와 피고는 모두 C의 채권자들인데, 피고는 이 사건 조정결정에 따라 C으로부터 위 가액배상금 23,000,000원을 지급받았다. 그러나 피고는 이미 C 등을 통해서 원고 등 다른 채권자들이 존재하고 그들이 피고와 C의 소송결과에 따라 회복된 채무자 C의 책임재산에 관하여 재차 배당 요구를 하는 것을 비롯한 법적 조치를 취하리라는 사정을 잘 알고 있었음에도 피고만 C에게 먼저 변제를 받는 방법으로 원고 등 다른 일반 채권자를 해하는 사해행위를 하였다. 따라서 C이 피고에게 한 변제행위는 사해행위로 취소되어야 하고, 원상회복으로 위 변제금 또한 반환되어야 한다.

3. 판단

가. 법리

(1) 사해행위의 취소와 원상회복은 모든 채권자의 이익을 위하여 그 효력이 있으므로(민법 제407조), 채권자취소권의 행사로 채무자에게 회복된 재산에 대하여 취소채권자가 우선변제권을 가지는 것이 아니라 다른 채권자도 총채권액 중 자기의 채권에 해당하는 안분액을 변제받을 수 있는 것이지만, 이는 채권의 공동담보로 회복된 채무자의 책임재산으로부터 민사집행법 등의 법률상 절차를 거쳐 다른 채권자도 안분액을 지급받을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일 뿐, 다른 채권자가 이러한 법률상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취소채권자를 상대로 하여 안분액의 지급을 직접 구할 수 있는 권리를 취득한다거나 취소채권자가 인도받은 재산 또는 가액배상금의 분배의무를 부담한다고 볼 수는 없는 것이다. 가액배상금을 수령한 취소채권자가 이러한 분배의무를 부담하지 아니함으로 인하여 사실상 우선변제를 받는 불공평한 결과를 초래하는 경우가 생기더라도, 이러한 불공평은 채무자에 대한 파산절차 등 도산절차를 통하여 시정하거나 가액배상금의 분배절차에 관한 별도의 법률 규정을 마련하여 개선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, 현행 채권자취소 관련 규정의 해석상으로는 불가피하다(대법원 2008. 6. 12. 선고 2007다37837 판결 등 참조).

(2) 또한 채권자가 채무의 변제를 구하는 것은 그의 당연한 권리행사로서 다른 채권자가 존재한다는 이유로 이것이 방해받아서는 아니 되고, 채무자도 채무의 본지에 따라 채무를 이행할 의무를 부담하고 있어 다른 채권자가 있다는 이유로 그 채무이행을 거절하지는 못하므로, 채무자가 채무초과의 상태에서 특정채권자에게 채무의 본지에 따른 변제를 함으로써 다른 채권자의 공동담보가 감소하는 결과가 되는 경우에도 그 변제는 채무자가 특히 일부의 채권자와 통모하여 다른 채권자를 해할 의사를 가지고 변제를 한 경우가 아닌 한 원칙적으로 사해행위가 되는 것은 아니다. 또한 채무자가 특히 일부의 채권자와 통모하여 다른 채권자를 해할 의사를 가지고 변제 내지 채권양도를 하였는지 여부는 사해행위임을 주장하는 사람이 입증하여야 할 것인데, 이는 수익자의 채무자에 대한 채권이 실제로 존재하는지 여부, 수익자가 채무자로부터 변제 내지 채권양도를 받은 액수 및 양도받은 채권 중 실제로 추심한 액수, 채무자와 수익자와의 관계, 채무자의 변제능력 및 이에 대한 수익자의 인식, 변제 내지 채권양도 전후의 수익자의 행위, 그 당시의 채무자 및 수익자의 사정 및 변제 내지 채권양도의

경위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판단하여야 한다(대법원 2004. 5. 28. 선고 2003다60822 판결 등 참조).

나. 다시 이 사건으로 돌아와 살펴본다.

(1) 피고가 D의 채권자로서 C을 상대로 사해행위 취소소송을 제기하여 그 조정결과에 따라 가액배상으로 23,000,000원을 수령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은바, 이러한 금원 수령이 법률상 원인 없이 이루어졌다고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,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보면, 원고는 다른 집행상의 절차에 따라 안분액을 지급받을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할 뿐 직접 취소채권자인 피고를 상대로 그 안분액을 청구할 권리 역시 없다고 판단된다.

(2) 나아가 C이 특히 피고와 통모하여 다른 채권자를 해할 의사를 가지고 변제를 하였는지에 관하여 살피건대, 갑 제4, 6, 8, 9호증의 각 기재와 증인 C의 증언만으로는 C이 피고와 통모하여 원고를 해할 의사로 23,000,000원을 변제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,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.

(3) 원고의 주장은 결국 이유 없다.

4. 결론

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.

판사 방창현